

서 면 답 변 서

○ 최호정의원

(질의요지)

□ 2014년 12월 서울시공무원이 작성한 연장허가검토서류(작성자: 주차계획과장 ○○○, 팀장○○○, 주무관 ○○○)에는 양재주차장이 입주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화의종결 판결로 2010년 4월 1일 파산선고로 등기폐쇄된 동성건설(주) 법인을 두고 (주)동성종합건설이 “화의중”이므로 허가가능하다고 검토서류를 허위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변)

□ 양재역환승주차장 사업시행자는 (주)동성종합건설로 2010.4.1. 파산선고된 회사는 (주)동성건설(효동종합건설(주), '04.11.12. 상호변경) 로 (주)동성종합건설와는 별도의 법인임

- (주)동성종합건설은 파산선고로 등기폐쇄된 사실이 없고, 또한 법원의 화의종결 판결 받은 사실도 없음

(질의요지)

□ (주)동성종합건설은 부도 후 10년 동안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월세 선납 받은 147억 원에 대한 부가세 약 13억원 중 본인들이 인정한 부가세 3억원(입주자추정 약 7억)을 횡령하고 조세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10년 연장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 부가세 10억원은 환급하였고, 3억원을 환급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체납한 것일 뿐이며 횡령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음

- 국세 체납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조회의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조세 부과징수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제공 불가 회신 받음

□ (주)동성종합건설 자금 사정상 세금 미납 등 채무관계 미정리 부분은 주차장 사용 연장을 위한 선결조건은 아님

(질의요지)

- (주)동성종합건설은 부도로 인해 2006년 6월 22일부터 10년 동안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법인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화의조건 불이행으로 화의인가 취소요청을 하는 등 채권에 대하여 단 한푼도 변제한 적이 없는 업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 소재의 도급순위 581위 토목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승인하여 10년 연장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 변)

- 대한주택보증의 화의인가 취소요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음
 -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체납으로 직권 말소되었으나 법인등기는 유효하여 사용기간 연장처리에 제약사항은 아니었음
- 대림토건(주)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것은 견실한 업체와 회사운영을 정상화하여 선량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음
 - 대림토건(주) 컨소시엄 가능여부는 TF 운영시 우리시 법무담당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항임

(질의요지)

- 서울시공무원이 작성한 (주)동성종합건설의 양재환승주차장 건설손익이 87억 적자이기 때문에 10년 연장허가를 통해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 입주보증금 76억 원을 포함하면 약 165억원의 흑자에 직영하던 주차장 894면을 2003년 8월 5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전세임대로 45억 원을 받고 삼안통상(주)에 넘기고 서울시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 운영권을 넘기고 받은 45억원의 누락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변)

- (주)동성종합건설 적자는 실제 99억원이며 주차장 임대료 45억원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월세선납 269억원에 포함되어 계상됨

□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 양재역환승주차장에 대한 유상 사용기간 연장은 관리운영권자인 (주) 동성종합건설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아니라, 양재역환승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선량한 세입자들의 피해 최소화, 예상되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주차장의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 유지 등 종합적인 고려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
- 아울러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사적채무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임